

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-

제 안 설 명 서

2022. 1.



조 복 희 의원

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: 조복희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(임명·휴직·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)을 가지게 됨에 따라,
-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규정을 마련하고,
- 안 제2조에서는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(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,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의 공정한 선발에 기여하고자 하오니,
-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[조복희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00822009
----------	----------

발의일자: 2022. 1. 26.

발의자: 조복희, 김화덕, 김태형, 이성순,
배지훈, 박정환, 이신자, 김귀화,
홍복조

1.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시험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(안 제1조)
- 나. 수당 및 여비(안 제2조 및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제정조례안: 붙임 참조
- 나. 관계법령
 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
 - 2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21조의3 및 제48조
 - 3) 2021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(인사혁신처)
- 다. 비용추계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당) 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문제의 출제·심사·선정·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
2.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
3. 시험의 감독 및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

②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계 법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·감독하고 법령과 조례·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□ 지방공무원 임용령

제21조의3(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원(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해야 한다.

1. 사업의 필요성
2.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
3. 임용 인원·등급 및 기간
4. 임용자격
5. 공고 계획
6. 임용요건

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. 다만, 5급 상당 이상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·군·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·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·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.

④~⑦ (생략)

제48조(시험위원 등)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, 채점, 면접시험, 실기시험,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.

1.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
2.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
3.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

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

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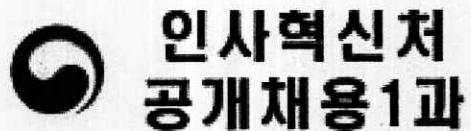
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.

⑤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·시험관리관·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.

**2021년도
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**

2021. 2.



2021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지급기준

구 분		단 위	지급기준(원)	비고
문 제 출 제	직관식(5자 형)	문제당	55,000	
	직관식(6자 형)	*	50,000	
	주관식	소문제당	40,000	
	학제 통합논술시험	분야별	100,000	
		합숙	1일/1인	300,000
	기본교재비	일반	5,000	
		PSAT	*	10,000
	면접문제	대문제	상회(A4 10면 초과)	*
			기본(A4 5~10면)	*
		중문제(A4 2~5면)	*	80,000
		소문제(A4 1면 이하)	*	40,000
	면접문제 합숙출제	교수, 광부원 3급 이상	1일/1인	300,000
		광부원 4급 이상	*	200,000
		광부원 5급 이하	*	150,000
	문제검토회의	교수	전일/1인	200,000
			반일/1인	100,000
		제작자	전일/1인	70,000
			반일/1인	35,000
문 제 설 사 선 정	주·직관식	1과목	1일/1인	300,000
		추가선정	1일/1인	100,000
	비합숙	전일	200,000	
		반일	150,000	
	감수위원	외부위원	1일/1인	300,000
		제작자	*	200,000
	운문위원	교수	1일/1인	300,000
		기타	*	165,000
	면접문제 합숙설사선정	교수, 광부원 3급 이상	1일/1인	300,000
		광부원 4급 이상	*	200,000
		광부원 5급 이하	*	150,000
	사전설사		1일/1인	200,000
	문제유형개발회의		*	200,000
	대면화회		1회/1인	200,000
	서면설회		*	150,000

구 분		단 위	지급기준(원)	비고	
문 제 제 검	교 수	1인/1인	200,000		
	교 사	*	150,000		
	기 타	*	70,000		
	추가검토	*	25,000	10회에 이상	
편 침 기 타	점자문제 편집	1일/1인	180,000		
	간호요원(합숙)	*	100,000		
출제관리	한숙	*	90,000		
시험 준비 시 험 중 사	시험장 책임관(사전출장)		1인/1인	20,000	
	시험장 준비	휴일	1일/1인	75,000	
		평일	*	50,000	
	시험종사자	휴일	반일	60,000	
			전일	90,000	
		평일	반일	40,000	
			전일	60,000	
	시험종사자 시간연장 추가수당	정규시간	1인/1인	10,000	
		1.5배 시간연장	*	30,000	
		1.7배 시간연장	*	40,000	
		기타 재관석 시험 (3급공체 1차시험 및 지역인재7급 제외)	*	20,000	
서 뷔 전 행 실 사 및 면 접 수 당	5급이상 채용시험 (공채, 경채 등)	재직자 (공무원)	반일	1인/1인	150,000
			전일	*	250,000
		외부 전문가	반일	*	200,000
			전일	*	300,000
	6급미하 채용시험 (공채, 경채 등)	재직자 (공무원)	반일	*	150,000
			전일	*	200,000
		외부 전문가	반일	*	200,000
			전일	*	300,000
회화역 평가 수당		1인/1인	300,000		

- ※ 면접시험이 정규근무 종료시간(18:00)을 2시간이상 초과하여 진행될 경우 사전결의에 의해 면접위원에 대한 수당 10만원 추가 지급 가능
- ※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전달인력, 전문 간호인력을 외부에서 지원받기 위해 필요시 시중 노임단가 지급
- ※ 감염병 확진 응시자를 관리·감독하는 시험장 종사자에 대해 시험종사 수당의 1배 범위에서 가산수당 지급 가능

일용인부임 등 집행기준

구 分		단 위	지급기준(원)	비 고
시험장 인부임	공 품 (1실기준)	1명 ~ 60명	22,000	
		61명 ~ 100명	45,000	
		101명 이상	60,000	
시 현 관 빙 인부임	공 품	인터넷원서접수, 답안지정리 및 제출자원 등	71,000	
국 가 고 시 센 태 인부임	한 숙	편 침장	1일/1인	100,000
		일리스트레이터	-	100,000
		숙련	-	80,000
		비숙련	-	71,000
		추가편침	-	25,000
	생 활	취사반장	1일/1인	140,000
		청소반장	-	120,000
		취사.청소(숙련)	-	110,000
		취사.청소(비숙련)	-	100,000
		편 침	1일/1인	71,000
	비 합 숙	생 활	-	71,000
시험장 운영비		취사.청소	-	71,000
서류전형시험		1개교 당	200,000	
편 기 시 험	(시험과목) PSAT			
(시험과목) 그 외				
면접시험		-	100,000	
시험장 임차료	공 품	1명 ~ 60명 (당 난방비포함)	15,000 (21,000)	면접시험장 임차료 별도 (당 난방비는 반월기준임, 잔임은 2배지급)
		61명 ~ 100명 (당 난방비포함)	20,000 (29,000)	
		101명 이상 (당 난방비포함)	30,000 (42,000)	

시험종사자 배정기준

구 분		단 위	배정기준	비 고
시 험 관리관	공 통	1실 ~ 10실	13명 이내	
		11실 ~ 20실	19명 이내	
		21실 ~ 35실	25명 이내	
		36실 이상	31명 이내	
시 험 감독관	공 통	1명 ~ 35명	2명	
		36명 ~ 70명	3명	
		71명 ~ 100명	4명	
		101명 이상	5명	

- ※ 시험 중 화장실 전면허용 시험장은 충별 전담 시험관리관 2~4명 추가 배정 가능
 - 충별 전담 시험관리관 배정기준은 동별로 각각 적용
(적용예시: 2개동 3개층씩 사용하는 경우 6개층으로 적용)
- ※ 감염병 확산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시험관리관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, 각 시험
장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관리관 추가 배정 가능